

# 행정정보공개지침

[금융위원회 훈령 제8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책임관) ① 위원회는 행정인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보공개 처리부서(각 팀 또는 과를 말한다)별로 정보공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장 행정정보공표

제5조(사전정보공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밖에 금융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중요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관련한 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7조(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① 위원회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 [www.open.go.kr](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정보공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인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는 내부위원 2인(안건 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장)과, 학계·법조계 등의 외부 민간전문가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

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 중 한 사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3조(교육 및 평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지급)**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및 우편요금)**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변환 전 정보의 공개 시 부과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보통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1월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별표2】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제6조 관련)**

<b>법 제9조제1항 제1호</b>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등록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li> <li>3.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li> <li>4. 공판 개정 전의 소송 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li> <li>5.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정보 (통계법 제13조)</li> <li>6.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li> <li>7.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li> <li>8.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li> <li>9. 감사 관련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li> <li>10. 징계위원회 회의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li> <li>11.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평정규칙 제9조)</li> <li>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li> </ol>
<b>법 제9조제1항 제2호</b>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정책 관련 각종 국제회의 협상대응 준비 및 전략 관련 정보</li> <li>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li> <li>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li> <li>4. 국제금융기구 등이 정부 또는 공적기관과 협약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비공개조건으로 생산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li> </ol>

<b>법 제9조제1항 제3호</b>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li> <li>2. 금융 법규 위반 관련 조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li> </ol>	
<b>법 제9조제1항 제4호</b>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li> <li>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li> </ol>	
<b>법 제9조제1항 제5호</b>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2. 조사 또는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되는 정보</li> <li>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li>4.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li>나.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li> <li>다.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li> </ol> </li> </ol>	

라.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가. (규제관련)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대관 2003.8.22, 2002두 12946)

다.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라.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마. 정책수립 과정 중에 수행한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결과

6.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기타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금융 관련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허가 신청 등 법령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 업무상 취득한 금융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금융 법규 위반 관련 조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20 - 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 . . . (제 차)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 .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1. 정보공개청구인

- 성명(법인 및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000000 - XXXXXXXX
- 주소(소재지) :

2. 정보공개청구내용

3. 심의회 상정이유

4. 검토의견

※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의견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제 200 - 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 . . . (제 차)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 . . .

##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 1. 이의신청인

- 성명(법인 및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 3. 이의신청 이유

### 4. 검토의견

※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제 차 정보공개심의회

<b>일 시</b>			
<b>장 소</b>			
<b>참 석 자</b>			
<b>회 의 내 용</b>			
<b>안 건</b>			
<b>회의 진행</b>			
<b>회의 결과</b>			
<b>작성자</b>	<b>직 급</b>		<b>성 명</b>

\* 안건 첨부